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Korean Womenlink
미디어운동본부

110-102 서울시 종로구 평동 27-9 동평빌딩 4층 TEL:734~1046/ FAX:736~5766
http://www.womenlink.or.kr ▪ minmedi@chollian.net

문서번호 : 미디어-2008-017 2008. 7. 29.(화)

수 신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참 조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과장

제 목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211호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대한 의견 제출의 건

1. 보건복지부의 힘찬 발전을 바랍니다.

2.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미디어 감시 활동을 펼쳐가고 있는 단체입니다.

3. 귀 부서가 입법예고하신「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211호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대한 기본 입장은 <찬성>입니다.

4. 그러나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5.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감사합니다.

◆ 담당 : 윤정주 사무국장 (02-734-1046)

◆ 별첨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대한 의견서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강 혜 란

<별첨>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대한 의견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Ⅰ. 기본 입장

- 국내 미디어정책은 산업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 진흥 정책 일변도로 전개되고 있음. 이는 기존 매체에 대한 규제 완화와 신규매체 도입을 통한 경쟁체제 확대로 요약됨. 이러한 탈규제와 경쟁적 상황 확대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금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확대 조치는 각종 편법이 난무하는 유료방송 편성에 시달려온 시청자들의 불만을 국가가 앞서 해결해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봄. 특히 전반적인 탈규제 흐름 속에서도 이러한 규제강화 조치가 전혀 과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사업자들의 무책임한 관행이 반복되었기 때문임.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는 개념을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법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 수단으로만 활용해 왔음. 오전 시간대 성인물 편성, 오후 10시 이후 급격한 성인 취향 프로그램 배치 등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회피 전략은 이미 상식을 넘어선 수준임. 결국 이러한 문제가 시간대 확대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것임.

- 더구나 이 문제는 수없이 제기되었으나 해결이 어려웠던 만큼, 사업자 스스로의 자율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봄.

- <u>이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확대를 적극 찬성하며, 해당 시행령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프로그램의 양산을 방지할 뿐 아니라 유료방송사업자들의 기술적 차단 조치를 촉진하는 매개가 되기를 기대함.</u>

Ⅱ. 세부 의견

1. 기술적 차단 조치 촉진

입법예고안	수정안
제18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될 방송시간(이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 한다)은 오전6시부터 오후12시까지로 한다. 다만, 「방송법」에 의한 방송 중 유료방송인 경우에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년시청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전제로 하여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 그 기술적 방법 및 시간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고시로 정한다.	제18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될 방송시간(이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 한다)은 오전6시부터 오후12시까지로 한다. 다만, 무료방송인 경우에는 디지털방송 전환완료시점까지 유예하고, 유료방송인 경우에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년 시청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전제로 하여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 그 기술적 방법 및 시간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고시로 정한다.

- 기술적 차단은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히 최대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 이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운용도 이러한 기술적 차단조치를 촉진하는 정책적 효과와 연계되기를 기대함.

- 현재 "방송법상 유료방송(방송법 제2조 용어의 정의)"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해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으로 유료 채널이나 PPV(pay per view) 등을 말함. 그러나 날로 디지털 쌍방향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술적 차단 조치를 통해 필터링을 구현하는 각종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의 경우에도 시간대 조정과 관련한 단서 조항을 개방해줄 필요가 있다고 봄.

- 이는 기술적 차단조치에 대한 사업자들의 관심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실효성을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임.

2. 아날로그 지상파 제외

입법예고안	수정안
제18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될 방송시간(이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 한다)은 오전6시부터 오후12시까지로 한다. 다만, _____「방송법」에 의한 방송 중 유료방송인 경우에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년시청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전제로 하여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 그 기술적 방법 및 시간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고시로 정한다.	제18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될 방송시간(이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 한다)은 오전6시부터 오후12시까지로 한다. 다만, 무료방송인 경우에는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시점까지 유예하고, 유료방송인 경우에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년 시청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전제로 하여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 그 기술적 방법 및 시간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고시로 정한다.

- 지상파방송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편성은 극히 제한적임. 현재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지상파 5개 채널에 편성된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단 2개에 불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상파방송에 대한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음.

- 더구나 지상파방송은 아날로그 상황에서 별도의 기술적 차단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보완할 뚜렷한 방안도 없음. 결국 이는 궁극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지상파방송만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이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확대에 있어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3. '무료방송'과 '유료방송'의 정의 추가

<1>과 <2>를 위해 '무료방송'과 '유료방송'의 개념적 정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봄.